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단53181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탈 퇴) A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

피 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E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9. 17.

주 문

1. 피고들과 E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F 대 274㎡ 중 5분의 1지분에 대하여 2017. 10.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8,417,28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각 4,208,6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와 금융기관들과의 금융거래 및 현존 채무

- 1) E는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이하 위 두 금융회사를 통틀어 ‘소외 회사들’이라고 한다)들과 사이에 각 소외 회사들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배상금은 소외 회사들이 정하는 지연손해금 비율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으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1. 5. 19.경 G 주식회사로부터 700만 원, 2012. 1. 18.경 I 주식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 2) E는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위 대출거래약정상의 원리금 지급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G 주식회사는 2014. 1. 3. E를 상대로 한 청주지방법원 2014차전7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위 지급명령은 2014. 1. 23. 확정되었다.
- 3) G 주식회사는 2016. 3. 21., I 주식회사는 2014. 12. 19. 원고에게 위 각 해당 대출거래약정상의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E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 4) 원고는 2020. 8. 13.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212932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I으로부터 양수받은 위 채권에 대한 청구를 하였다.
- 5) 원고가 양수받은 E에 대한 채권액은 2020. 12. 16. 기준으로 합계 12,511,425원[= G 주식회사와의 약정 원금 잔금 868,632원 + 이자 2,474,832원(이율 연 40.9%) + I 주식회사와의 약정 원금 잔금 2,434,882원 + 이자 6,733,079원(이율 연 39%)]이다.
- 6) 원고는 2021. 1. 2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E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E의 사해행위

1) E의 모친 망 J이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인 E와 피고들, K, L는 2017. 10. 15. 피고들과 사이에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청주시 흥덕구 F 대 2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들이 취득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2018. 2. 23. 접수 제18522호로 피고들에게 상속등기가 경로되었다.

2) E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부터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이다.

3) 피고 D는 2020. 3. 10. 주식회사 M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17. 위 회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이는 E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며, E와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상속지분인 1/5 지분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8,417,28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상회복으로 각 4,208,6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면서 다만 E의 일반 채권자들이 원고 외에도 다수가 있으므로 일반 채권자별로 각 해당 채권액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상환하여야 하고, 원고에 대하여도 그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